

10. 강사비 및 기타 경비 예산편성 기준표

- 본 기준표에 제시된 금액은 최대한도 사용 가능한 한도 금액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 가능

항 목	기 준	사용한도	비고
특별 강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/현직 장/차관(급) 이상 • 전/현직 대학총장(급) • 전/현직 국회의원 • 대기업 총수(회장) 또는 국영기업체장 •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, 시민단체, 기업교육 등 전문직 종사자 •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로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시간 최대 350,000원 • 초과 매시간당 최대 150,000원 	
1급 강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학 조교수 이상,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• 인간문화재, 유명예술인 및 종교인 •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• 기업/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, 중역 • 판/검사,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• 전·현직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·현직4/5급 공무원 • 사회복지 등 해당 강의 관련분야 기관·시설장 •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, 시민단체, 기업교육 등 전문직 종사자 • 기타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시간 최대 250,000원 • 초과 매시간당 최대 150,000원 	* 단체의 대표자 및 유급의 내부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(동일법인이라도 사업장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타 기관의 직원인 경우에는 지급 가능)
2급 강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• 전·현직 4/5급 공무원 • 중소기업체 임원급 • 기업·기관·단체의 부장급 • 인간문화재·유명예술인 등 보조출연자 • 통계이론, SAS, SPSS 등의 전문가 • 박사학위소지자 • 특별강사, 일반 1급 및 일반 3급을 제외한 자 • 사회복지 등 해당 강의 관련분야 기관·시설 중간관리자로서 관련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 •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, 시민단체, 기업교육 등 전문직 종사자 • 기타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시간 최대 230,000원 • 초과 매시간당 최대 120,000원 	* 강의에 필요한 교재의 원고료, 강사 교통비(실비)는 필요사유에 따라 별도 지급 가능 * 온라인 강의 강사비 지급기준은 p.31 참고
3급 강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·현직 6급 이하 공무원 • 전임이외의 외래시간 강사 • 외국어/전산 등 학원강사 • 체육, 레크레이션 등 전문강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시간 최대 170,000원 • 초과 매시간당 최대 100,000원 	

항 목		기 준	사용한도	비고			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회복지 등 해당 강의 관련분야 기관·시설 중간관리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가 없는 자 •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, 시민단체, 기업교육 등 전문직 종사자 • 기타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 						
강 사 비	보조 강사	•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시간 최대 50,000원 • 초과 매시간당 최대 30,000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단체의 대표자 및 유급의 내부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(동일법인이라도 사업장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타 기관의 직원인 경우에는 지급 가능) *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봉사활동에 실제 소요된 경비에 한해 예산한도 내에서 지급(임직원 자원봉사 활동비 제외) 지급증 필수 첨부(활동명, 활동 시간 및 지역, 소요비용 및 산출 근거 표기) 				
	다수인 출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시간 이하 • 2시간 초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5인 이하 최대 33만원 • 6~10인 최대 45만원 • 11인 이상 최대 66만원 • 5인 이하 최대 38만원 • 6~10인 최대 55만원 • 11인 이상 최대 80만원 					
회의참석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시간 이하 • 2시간 초과 시 (1일 1회에 한함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00,000원 • 130,000원 					
단순인건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인/1일 (1일 8시간 기준/ 중식비 포함) ※ 월 60시간, 1개월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가입필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단순인건비 84,460원 (중식비 7,500원 포함) • 주휴수당 76,960원 ※ 2023년 최저임금 반영 					
자원봉사자 활동비		•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, 식사비 등의 활동비(1회 기준, 예산한도 내 실비지급)	• 30,000원 이하					
원고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A4용지 1매 기준 - 글자크기 13p, 줄간격 160%, 상하여백 15, 좌우여백 25, 머리말·꼬리말 15, 또는 300단어 -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3면을 A4 1면으로 산정 - 원고지로 작성한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 3.5매를 A4 1면으로 산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2,000원 * 시간당 6매까지만 인정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					
출장여비		• 시내여비	• 실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일비, 식비는 해당 시·도를 벗어나는 출장에 적용 *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 시와군 및 섬(제주특별자치도 제외) 밖으로의 출장으로 왕복 거리가 12km 이상인 출장에 대해 시외 출장 적용. 단, 육로 120km(왕복) 또는 수로 60km(왕복) 미만의 출장에 있어서는 일비의 전액과 식비의 3분의 1만을 지급함. * 기관차량 이용 시 일비의 2분의 1만을 지급(단, 숙박 시 전액지급 가능) * 출장지에서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 				
	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colspan="2">교통비 (KTX일반, 고속버스, 전세버스 등)</td> </tr> <tr> <td style="width: 50%;"></td> <td style="width: 50%;">• 실비</td> </tr> </table>	교통비 (KTX일반, 고속버스, 전세버스 등)			• 실비	• 실비	
		교통비 (KTX일반, 고속버스, 전세버스 등)						
			• 실비					
	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"></td> <td style="width: 50%;">일비(1인 1일)</td> </tr> <tr> <td style="width: 50%;"></td> <td style="width: 50%;">• 20,000원</td> </tr> </table>			일비(1인 1일)		• 20,000원	• 20,000원
	일비(1인 1일)							
	• 20,000원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"></td> <td style="width: 50%;">식비(1인 1일)</td> </tr> <tr> <td style="width: 50%;"></td> <td style="width: 50%;">• 25,000원</td> </tr> </table>		식비(1인 1일)		• 25,000원	• 25,000원			
	식비(1인 1일)							
	• 25,000원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"></td> <td style="width: 50%;">숙박비(1인 1실)</td> </tr> <tr> <td style="width: 50%;"></td> <td style="width: 50%;">• 실비(상한액 60,000원)</td> </tr> </table>		숙박비(1인 1실)		• 실비(상한액 60,000원)	• 실비(상한액 60,000원)			
	숙박비(1인 1실)							
	• 실비(상한액 60,000원)							

항 목	기 준	사용한도	비고	
			해당 식비를 제외하고 지급 (예. 교육 참석 차 왕복 120km 이상의 지역으로 시외출장 시 점심식사가 제공되는 경우 식비의 2/3만 지급)	
워크숍	• 1인 기준	• 120,000원	* 1박2일 기준(숙박비, 식비) * 숙박일수 추가 시 추가되는 일수 당 기준단가 적용 * 진행비(교통비, 대관료 등) 실비 적용하여 별도 편성 * 사용한도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, 모금회의 사전 승인 필요	
식사비	• 1인 기준	• 15,000원	* 참석자가 모두 내부직원일 경우 지출 불가 * 온라인으로 회의, 강의 등을 진행할 경우 지출 불가(식사, 다과를 대신한 기프트콘, 쿠폰 지급 불가)	
다과비	• 1인 기준	• 7,500원		
자문비	• 2시간 이하	• 1회 100,000원	* 슈퍼비전기록 필히 첨부 * 내부직원 지급 불가 * 시외의 경우, 교통비 실비지급 가능 * 1일 상한액 20만원	
	• 2시간 초과	• 1회 130,000원		
	• (공식)서면자문	• 1회 100,000원		
	• 공통사항 : 자문 내용 기본 양식 A4 용지 1매 기준, 글씨크기 13 point, 줄간격 160%, 상하 여백 15, 좌우 여백 25, 머리말·꼬리말 15			
세미나, 토론회 등	토론	• 1시간 이하	• 1회 100,000원	* 단체의 대표자 및 유급의 내부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(동일법인이라도 사업장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타 기관의 직원인 경우에는 지급 가능) * 강사 교통비(실비)는 필요사유에 따라 별도 지급 가능
		• 1시간 초과	• 1회 130,000원	
	기초연설, 발제, 사회	• 1시간 이하	• 1회 200,000원	
		• 1시간 초과	• 1회 300,000원	
번역료	• 한국외대 통번역센터 요율표 기준 (매해 발표되는 기준 참조, 시행시점 가장 최근 자료 이용) ※ 단, 전문기관 등에게 의뢰하여 작성된 원고 및 통·번역자료에 대해서는 별도계약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.			
수어통역	• 1인 1시간 기준	• 100,000원	* 개인으로 활동하는 수어통역사 기준이며, 수어통역 관련 단체(업체)를 통하는 경우 해당 단체(업체)의 단가 적용	

주) ※ 위의 예산편성기준표는 최대 지급 기준이며 상황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이 가능함.

1. 강사비 초과시간의 계산 방법

- 같은 날짜에 동일대상에게 동일내용(주제)을 강의하는 경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강의를 하여도 두 번째 시간 부터는 초과시간으로 계산함

2. 다수인 출강

- 1개의 프로그램에 2인 이상의 강사가 참여하는 교육

〈 온라인 강의 강사비 지급기준 〉

유형	강의 방식	지급 단가	비고
녹화형 강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오프라인 강의를 그대로 촬영하여 사이버 강의화 한 콘텐츠 - 강사가 콘텐츠 제작을 위해 별도로 원고를 작성하고 직접 출연하여 제작한 콘텐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오프라인 강의 강사료 - 강사출연비 : 시간당 10만원 이내 ※ 최종 편집된 영상의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강사출연비는 강사의 촬영 동기 요인 강화 및 다회 노출 부담에 대한 보상 - 녹화된 영상을 반복 없이 1회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사출연비를 지급하지 않음
실시간 라이브 강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강사와 강의대상이 특정 시간에 원격 강의에 참여하여 진행하는 방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오프라인 강의 강사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시간 라이브를 녹화하여 반복 사용하는 경우에는 녹화형 강의에 준하여 강사출연비 지급

- 주) 1. 상기 기준은 지급 가능한 최대금액으로 강의의 난이도, 내용 등에 따라 제시된 한도 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.
2. 영상물의 저작권에 관하여 붙임의 양식에 따라 강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, 콘텐츠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(저작권재산권)는 기 체결한 배분사업 표준계약에 의거, 수행기관과 모금회에 귀속됨.
3. 강의시간은 최종 편집된 영상에서 강의가 진행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, 참여자의 시청 편의를 위하여 영상을 분할 편집한 경우에는 총 영상 시간의 합으로 계산함.
예) 강의 전후로 기관소개 영상 등을 포함한 경우, 강의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음.
4. 강사료 및 강의출연비에 대한 비용 산출 시 1시간 이하는 1시간으로 계산하되, 30분 이하는 0.5시간으로 산정하여 기준 단가의 2분의1 한도 내에서 지급함.
5. 강사가 제작한 강의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, 상기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.
6. 영상물 제작시 모금회의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영상임을 표시하여야 함.
예) “강의명” 영상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(로고삽입)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.
7. 지원사업으로 제작한 영상을 통한 광고·수익 창출은 불가함.